



심결사례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심결사례

2001. 6. 23.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주)용마식품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2001광고0435)	(주)용마식품은 2000년 8월~2001년 3월 기간 중 조선일보 등 6개 일간지에 자신의 삼겹살 체인점인 [왕삼겹.com]에 대하여 광고함에 있어 '일일평균 200만원, 월 평균 7,000만원대의 매출로 오픈점마다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라고 표현, 일일 평균매출 및 월 평균매출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가맹점이 상기와 같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한 것은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표시 · 광고법 제3조제1항제1호 위반	◎ 부당한 광고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기 광고한 1개 중앙일간지 전판에 5단×12cm의 크기로 1회 게재하여 공포토록 함

2001. 6. 26.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한국GM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2001소기1392)	한국GM은 “오존발생기”를 제조·판매하면서 살균효과와 관련하여 “과일, 야채 그리고 식기류 등에 붙어 있는 화학세제 등의 유해물질과 행주, 도마, 주방용기의 악취 까지 산화 분해시켜 줍니다”, 농약 등 유해물질 제거효과와 관련하여 “프리존은 오존 및 활성산소의 강력한 산화력에 의하여 야채나 과일의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잔류농약과 유독성 물질을 제거하여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중금속 제거효과와 관련하여 “프리존에서 생성되는 오존 및 활성산소를 중금속과 결합하여 금속산화물의 형태로 되어 구리는 침전되고 물은 안정성을 도모하게 됩니다”, 피부염 등 치료효과와 관련하여 “프리존으로 살균제거된 용수는 수중에 존재하는 모든 세균과 유해물질을 산화 분해 제거한 물이므로 피부염이나 기타 세균성 질환, 민감성 피부의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광고하는 등 그 효과를 과장하여 표현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치료효과가 있다고 허위·과장 광고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표시 · 광고법 제3조제1항제1호 위반	



2001. 7. 2.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주)쿠키아카데미의 부당한 광고행위 및 자료제출 거부행위에 대한 건(2001 광고1288)	(주)쿠키아카데미는 인터넷을 통한 학습교재업과 관련, 2001. 1. 10. 동아일보에 5단×37cm의 크기로 “눈높이 선생님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방문학습은 지난날 그나마 유일한 대안이었습니다. 과제물 채점만으로도 시간이 턱없이 모자라 교육다운 교육 한번 못 해보고, 말만 그럴듯한 교육은 현실과는 거리가 멀었고 하루에도 수십 군데의 아이들을 방문하느라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라고 1회 표시·광고하는 등 자기의 경쟁사업자인 (주)대교의 방문학습 방법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비방광고행위를 하고, 공정위가 본 사건 조사를 위해 당사에 수차에 걸쳐 자료제출을 촉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여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4호 및 공정거래법 제20조제1항제5호 위반	◎ 부당한 광고행위 및 자료제출거부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 전판에 5단×15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 ◎ 과태료 납부 : 1,000,000원

2001. 7. 11.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아산지역 3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2001전사 1467)	아산지역 3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우석·장용·아산자동차)은 학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학원수강료의 결정과 관련하여 학원사업자간 지나친 과다경쟁으로 인하여 학원운영이 어려움에 처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자, 이에 대한 대책마련의 일환으로 학원대표들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 대전·충남협회 모임에 참석할 때마다 상호간의 가격경쟁을 자제할 것을 누차 제안하였으며, 2001년 3월초에는 2001년 4월부터 학원수강료를 인상하기로 합의, 이를 시행하는 등 개별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수강료를 공동으로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는 상기 지역 동 분야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이므로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 제1호 위반	◎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고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전지규격 78.8cm×109cm의 크기로 공표문을 작성, 7일간 부착함으로써 공표토록 함